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3.10.)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8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4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6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 가.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변경)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주택용 소방시설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1) 전 군민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 2)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1) 지원대상: (현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 (변경) 거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2) 우선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사는노인 등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가.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주택의 화재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택화재예방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라. 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주택화재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20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정 세 환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2) 사업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5대
- 3) 위탁대상 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5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 4)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5)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6) 위탁차량

차종	차명	차량번호	연식	비고
중형승합	더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2	2019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더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3	2019	
중형승합	더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63	2019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49	2020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51	2020	

7)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8년도 : 3,045명(1일 평균 운행횟수 9.6)
- 2019년도 : 2,8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20년도 : 3,446명(1일 평균 운행횟수 9.4)

8) 운영계획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 위탁기간 : 3년간
- 운행시간
 - (일, 월 : 7~22시) (화, 토 : 8시~23시) (수, 목, 금 : 7시~23시)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9) 향후일정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21. 10월중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0월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21. 11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1월중
- 위탁 운영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10)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232,700천원(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3. 관계법령

- 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나.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가. 본 동의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하는 사항으로,
- 나.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운영과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마.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과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 업 명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2)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0(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3) 사 업 비 : 86,836천원(국 43,418, 도 13,025, 군 30,393)
- 4)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마. 시설현황

- 1)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견암폭포 등
- 2)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1)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2)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3)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4)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숲 교육 등 대체프로그램 운영

사. 위탁기간 : 2021. 4. ~ 12. (1년 이내) ※ 국·도비 예산확보 신규사업

아. 향후계획

- 1)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2)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3)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평가환류

4. 관계법령

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가. 본 동의안은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관리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업체를 선정, 민간위탁코자하는 것으로,

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등)에 의하면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의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의무규정,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원규정 명시되어 있고,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에는 “산림교육 실시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있음.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3 제1항(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업체의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바.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2. 24.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춘구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 업 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 2) 사 업 자 :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
- 3)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1월(7개월간)
- 4) 발전용량 : 19.9kw
- 5) 사 업 비 : 45,000천원(군 40,500 자부담 4,500)

6) 연간수익 : 5,000천원/정도

※ 수익금 사용 : 김용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
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다. 추진사항

○ 2020. 10. : 국비 공모사업 선정

라.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거창읍 양평리 338-5(주차장)	812m ²	100m ²	19.9kw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

마.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원상복구 계획 접수(환경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2021. 11. : 공사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경제교통과)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다.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가.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 부지에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
소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공유재산의 임대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재산관리관은 관련 법령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라. 따라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용수익·허가는 동의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